

독도어장과 제주해녀*

김 수 희**

- I. 머리말
- II. 독도어장의 역사적 변천
 - 1. 해방전 독도어장의 어업 실태
 - 2. 해방후 독도어장의 어업 실태
- III. 독도어장의 어업행정과 독도 어민들
- IV. 제주해녀의 독도어장 진출과 어업 실태
- V. 맺음말
- 1. 제주해녀의 독도 진출과 독도의 용수비대
- 2. 독도어장의 진출 방식과 조업 형태의 변화

I. 머리말

해방 직후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어민들은 독도어장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어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도어장은 한국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미역어장인 동시에 한국최고의 오징어 어장으로 부상됨에 따라 어민들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1947년 연합국사령부는 독도어장에 일본어민이 대거 진출하여 난획할 것을 예상하고 일본인의 어업범위를 결정한 맥아더라인을 선포하였다. 즉 일본어선은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본인 어업구역에서 독도를 배제시켰다. 이후 일본의 요구에 의해 독도기점이 12해리에서 3해리까지 확대되었지만 독도는 일본 수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제시대 독도는 죽도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에 의해 독점되었던 어장이었으나 해방후 한국어민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갔던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음.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sic1225@daum.net.

어장'이라고 해방과 함께 다시 찾은 영토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독도에서 활동한 어민들은 미군 폭격으로 큰 피해를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출어하였고 이 때문에 주한미군사령부는 극동사령부에게 폭격금지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대일강화조약이후 일본은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독도 침탈을 강행하였다. 이에 울릉도주민들은 스스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자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해녀를 동원해 미역채취업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독도어장에 대한 연구는 조선 숙종기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나타난 양국어민들의 어업분쟁과 고대시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간 사람들의 어업 활동, 일제 강점기 죽도어렵합자회의 어장 경영 방식등 영유권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독도의 최초 주민 최중덕에 대한 자서전식 연구가 출판되었으나 이것은 1965년 이후 독도에 거주한 최중덕의 삶을 부각시킨 인물사적 연구이다.¹⁾ 아직까지 독도어장에 대한 어업 행정 적용과 어장 이용 방식, 독도의용수비대가 제주해녀를 고용하여 어업 활동을 전개한 역사적 연구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도어장에서 활동했던 어민들의 어업적 양상을 어업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독도어장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도 최초주민 최중덕이 암석 위에 집을 짓고 거주지를 마련하기까지 어민들은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였는가. 그는 왜 독도 거주를 결심했는가 등 독도에 주민이 거주하기까지 독도어장의 중요성을 어업 행정의 적용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김호동,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사람들』 『해양문화연구』7·8호합(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2.5); 김수희,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38: (2011);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영남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10); 김호동, 『영원한 독도인 최중덕』(서울:경인출판사, 2012).

참고로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독도어업은 미역어업이고 면허어업의 대상이 되는 마을어업이다. 수산업법에서 마을어업은 수심 7미터 이내의 수면에 대해 면허하는 어업으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 한하여 면허된다. 마을어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거주자가 우선권이 있으며 이 어업권을 획득한 자는 어장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하였다.

II. 독도어장의 역사적 변천

1. 해방전 독도어장의 어업 실태

1787년 라페루즈함대는 울릉도를 지나면서 선박 건조하는 조선인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전라도 거문도어민으로 매년 울릉도에 가서 선박 건조 및 어로 활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상업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문도의 행정구역은 전라도이지만 군정은 경상도 통영수군통제영이 관할하였다. 거문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운행상 통영에 가까운 점, 말과 전복 껍질 등 통영 진상품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영수군통제영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²⁾

1962년 3월 20일자 『민국일보』기사에 의하면 1875년 거문도에서 태어난 김윤삼은 20살경(1895년경) 울릉도에 갔는데 그는 ‘동쪽바다 가운데 어렴풋이 섬’ 독도를 보았다. 그는 거문도 장작지포 현재 서도리 출신으로 서도리사무소에는 1875년생 김윤삼 호적이 남아있다. 당시 그는 독도어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895년(20세) 되던 여름철에 ‘천석짜리’ 무역선 5~6척이 원산을 거쳐 울릉도에

2) 김수희,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38 (2011), pp.200-208.

도착하여 그 울창한 나무들을 찍어 뗏목을 지었다. 날이 맑을 때면 동쪽바다 가운데 어렴풋이 섬이 보였다. 나이 많은 뱃사공에게 저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저것은 돌섬인데(石島 = 獨島의 별칭) 우리 삼도(거문도)에 사는 김치선(그 당시로부터 140년 전-1820년경)할아버지 때부터 꼭 저 섬에서 많은 가재를 잡아간다고 가르쳐주었다. 일행 수십명은 원산 등지에서 명태 등을 실은 배를 울릉도에 두고 뗏목을 저어 이틀만에 약 2백리 되는 ‘돌섬’에 도착했다. 섬이 온통 바위로 되어있었다는데 사람이라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돌섬은 큰 섬 두 개 그리고 작은 섬이 많이 있었는데 큰 섬 사이에 뗏목을 놔두고 열흘 남짓 있으면서 가재(강치·주 감)도 잡고 미역, 전복 등을 바위에서 따다.”³⁾

거문도인 김윤삼은 울릉도에서 독도에 갔는데 독도는 ‘온통 바위로 되어 있다’, ‘돌섬은 큰 섬 두 개, 작은 섬이 많이 있다’, ‘일행 수십명은 원산 등지에서 실은 배를 울릉도에 두고 뗏목을 저어 이틀만에 약 200리 되는 돌섬에 도착했다’고 1820년경 거문도인들은 독도어장을 이용하였다. 그는 ‘큰 섬(서도와 동도)사이에 뗏목배를 나누고 열흘 남짓 있었다’, ‘강치와 미역, 전복등을 바위에서 따다’고 독도까지의 이동 수단은 뗏목 배이며 10일 정도 체류하면서 전복과 미역, 강치를 잡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도가 ‘돌섬’이라고 말하였다.

위의 증언처럼 거문도인들은 1820년경부터 독도에서 미역, 전복을 채취하고 강치를 잡았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에서 “이 무인도에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명치 36년(1903년-주)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일본은 1903년부터 강치어민 나카이 요사부부가 독도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근거로 편입하였는데 이것은 거문도인들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 침탈을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

3)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 『민국일보』(1962.3.20.)

었다.⁴⁾

한편, 일본영토에 편입된 독도어장은 나카이 요자부로외의 청원에 따라 명치어업법이 적용되었다.⁵⁾ ‘종래의 관행’을 중시하는 명치어업법은 1903년을 기점으로 나카이 요자부로외 3인의 어장 이용자가 확인되어 이 3인의 공동 명의로 죽도어렵합자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명치어업법에서 독도의 강치어업은 부망(浮網)어업에 포함되었고 어업단속규칙에 따라 죽도어렵합자회사만이 강치어업을 인정하였다.⁶⁾ 1911년 어업단속규칙이 제정하여 강치 포획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연안수역에서 미역, 전복 등을 채취하는 것을 인정하였다.⁷⁾ 이로써 일본은 어촌 경영을 위해 지선(地先) 마을 어민에게만 부여했던 마을어업권(공동어업권)을 비롯한 모든 어업권을 죽도어렵합자회사에게 허락하였다. 이것은 이미 독도의 영토편입 시기에 나카이 요자부로외 오키도사, 혹은 일본 관료들과의 사이에서 결정된 약속된 사항들이었다.⁸⁾

이에 따라 독도어장은 죽도어렵합자회사만 독점 이용이 가능하였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오키도로 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1910년 중반 경 울릉도거주 일본인이 난파로 상륙하면서 어장 정황이 알려졌다. 이후 1918경 울릉도 거주 일본인 3명이 한국인 십여명을 데리고 출어하였으나 발각되어 해산물을 몰수당했다.⁹⁾ 이 일본인 중에

-
- 4) 일본 학자들은 무주지선점론에 의거하여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으며, 울릉도인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갈 수 없다고 조선인들은 독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員, 1996년; 池内敏, 「竹島/獨島と石島の比定問題・ノート」 『HERSETEC』4-2, 2010년).
- 5) 명치어업법은 ‘어장 관행’을 어업권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면서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 어업권을 부여하는 면허어업이다. 이 가운데 마을어업은 미역과 각종 해조류를 채취하고 어패류를 잡는 어업으로 지선어장의 주민 모두가 이용 권리를 가진 총유적 형태의 어업으로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 면허하고 있다.
- 6) 川上健三, 앞의 책, p.232.
- 7) 같은 책, p.239.
- 8)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영남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10), pp.137-141
- 9) 문서번호 001-02, 中井養一(中井養三郎의 장남), 1953년 7월 6일 구술서 (島根縣總務部總務

는 울릉도에서 통조림공장을 하는 일본인 오쿠무라 헤이타로(奥村平太郎)가 있었다.

1925년경 죽도어렵회사가 해체되어 어업권이 타카하시 도모지로(橋岡友次郎) 일족에게 판매되었다. 울릉도에서 통조림 공장을 경영하는 오쿠무라 헤이타로가 이들과 3년에 1,600엔 계약을 맺어 어장이용권을 구입하였다.¹⁰⁾ 오쿠무라 사후 그의 아들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는 조선인 어민 40명(감독자는 일본인 2~3명)을 동원하여 잠수기어업을 하였고 1941년에는 제주해녀 16명을 고용하여 성게 채취업을 하였다. 이렇게 독도어장은 일본영토 편입직후 울릉도와 오키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한 회사가 독점하였으나 1920년경부터 울릉도거주 일본인이 고용하여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독도어장은 울릉도 통조림 원료 공급지로 이용되었고 오키인은 몇 명이 몇 일간 머물면서 몇 마리 또는 수 십마리의 강치를 생포하여 정기적으로 어장을 이용하지 않았다. 필요에 의해 수시로 단기간 이용하였다.

그런데 강치 어업권을 가진 오치군(隱地郡) 고가촌(五箇村) 하시오카도모지로(橋岡友次郎)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어업권을 고가촌(五箇村) 명의로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고가촌에서는 촌회의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건의하였으나 시마네현 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도어업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독도는 오키도사의 소관이었고 관유지임으로 함부로 촌회에서 결정하여 편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또한 자기들의 지역(地元)라는 이유로 수 십리나 떨어진 곳을地元라고 말할 수 있는가.¹¹⁾

課所藏, 『涉外關係綴』, 1951년).

- 10) 이들은 소형발동기선에 잠수기선 2대를 묶어 일본인 3명을 포함하여 조선인 13명 총 16명을 동원하였다. 어업 기간은 4월 하순에서 7월 하순 3개월로 1일, 잠수기 2대로 전복 600관을 포획하였다. 오쿠무라 헤이타로 사후 그의 아들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는 1938년부터 1년 1,500엔으로 계약하고 1942년까지 독도에서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 11) 문서번호 013-00, 「極秘」(朱印) 竹島について第一 吉野氏談話の概要, 1953년 9월 30일 구

당시 시마네현 지방과 주임이었던 요시노(吉野)는 지사가 독도 마을 어업권을 각하하고 보류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고가촌(五箇村)관할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시마네현 지사는 오키도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어장에서 고가촌(五箇村)어민의 어업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고가촌 마을어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제시대 독도어장은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으나 실제 독도어장을 이용한 것은 울릉도 거주 일본인 및 한국인들이었다. 독도의 마을 어업권을 매입한 일본인은 1953년 일본정부가 조사한 청문조사에서 ‘울릉도 도동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는데 울릉도와 가까운 섬(屈島)이다’고 울릉도내에 독도가 있다고 하였다.¹²⁾ 울릉도와 가까운 곳에 독도가 있으며 이들이 독도어장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인들은 독도가 자신들의 생활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물리적인 힘이 없어지다면 울릉도인들은 언제든지 독도에 쉽게 갈 수 있다.

2. 해방후 독도어장의 어업 실태

조선시대 미역어장이었던 독도어장은 일제시대 통조림 원료 공급지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미역이 잘 자라 방치 상태였다. 태평양 전쟁기 일본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울릉도인 윤상길과 김무생, 김기수 등은 미역 채취를 목적으로 출어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혼란 속에 양식이 부족한 울릉도에서는 자연산 돌미역이 식량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해산물이었으므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독도 어장에 진출하였다. 이 시기 독도 어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천에 깔린 것이 미역이었다고 전한다. 길이가 짧아 손질을 따로 해야 하는 육지 미역에 비해

술서 (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涉外關係綴』, 1953년.

12) 문서번호 001-02, 奥村亮(奥村平太郎의 장남), 1953년 7월 11일 구술서 (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涉外關係綴』, 1951년).

독도미역은 따서 그대로 말려 사용해도 될 정도로 길었으며 질이 좋았다.¹³⁾

그런데,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미역 채취를 하던 어민들이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발동선 7척, 전마선 14척, 범선 2척이 침몰하고 30여 명이 폐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 공군 극동사령부는 미 제5 공군 소속 B29폭격기가 어선들을 바위로 오인해 연습폭격을 했다고 발표했을 뿐 진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1948년 6월 17일 독도폭격사건의 배상절차에 들어간 주한미군정사령부가 피해 정도와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 소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단을 동해와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소청위원회는 위니아크지크 대위(주한미군소청위원회 위원), 매클루어(농무부 수산국), 밀롭다 맨 대위(대구군정청 법무장교), 기타 통역 약간 명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48년 6월 7일 직전의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바다는 거칠었다. 본토에서 건너온 한국 어부들과 (울릉도)섬의 주민들은 울릉도 마을 한곳에 모여서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독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그들 조상의 조상들이 그들 이전에 갔던 곳이다. 독도 주위의 바닷물은 미역에 특수한 생식력을 주는지, 그곳에서는 미역이 엄청나게 잘 자랐다. 이들 어부들은 미역 거래를 통해서 생계를 영위했다. 1948년 6월 7일, 일기의 변화가 생겼다. 바다는 잠잠해졌고 약 60명의 한국 어부 일행은 7대의 기선과 12대의 범선을 타고 독도로 출발했다. 범선들은 독자적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기선에 예인되었다. 일행은 6월 7~8일에 독도에 도착하였다.¹⁴⁾

13) 경상북도,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 (대구경북연구원, 2009년), pp.160-170.

14) USAFIK Key File no, KKK-3231. In JAGO files; "History of Claims Service, USAFIK,"(undated),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X 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41 [정병준, 『독도 1947』,

1948년 6월 미군의 독도폭격을 받은 생존자들은 독도가 ‘그들 조상의 조상들이 그들 이전에 갔던 곳(their fathers and their fathers’ fathers had gone before them)’이라고 하며 독도가 자신들의 조상들의 어장이었는데 왜 폭격을 당했는가 분노를 나타냈다. 폭격을 받은 기선 7척 중 5척은 죽변에서 간 어선으로, 이 기선 7척은 12대의 범선을 예인하여 미역 채취 작업을 하였다. 독도로 간 어민들은 울릉도인뿐만 아니라 죽변지역 어민들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독도에 갔던 것이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주한 미군사령부를 경유해 극동사령관에게 독도폭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1948.6.24)에서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 명의로 된 이 공문에서 “리앙쿠르암 인근이 한국어부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상의 어장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리앙쿠르암은 인근 해역은 한국어부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상의 어장에 속합니다. 이 지역은 분명한 세계 최고의 오징어 산지입니다. 1947년간 1만 1,000톤의 오징어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1947년간 다른 어류 11만 550톤을 이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이 해역은 정어리어장으로도 유명했으며 다양한 어족들이 회귀할 경우에는 어부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역은 울릉도와 인근 도서에 거주하는 1만 6,000명의 어부 및 그들 가족들의 주요 자원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456척의 어선을 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동부해안에서 온 많은 어부들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해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생선은 중요 단백질 공급원의 하나이며 현재 한국의 어류 소비는 권장 소비량의 50%미만입니다.¹⁵⁾

주한미군사령부는 독도가 울릉도와 인근 도서에 거주하는 어부 및

둘베게, 2011, p.201].

15) CG, USAMGIK(Dean) to Commander in Chief, Far East(1948. 6. 24), Subject: Bombing off Liancourt Rocks, “AG684 target and Bombing Ranges, 1948,” 1948, 'RG554, Entry AI 1378,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Decimal Files)1945-1949,Box 141 [정병준, 앞 책, p.193].

그들 가족들이 생계이용하는 어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곳은 오징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들도 풍부하여 1947년 오징어 1만 1,000톤, 이외 어종 11만 550톤이 어획되는 좋은 어장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많은 어민들은 미군의 폭격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출어를 하고 있었다. 1952년 9월 18일 한국산악회가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을 때 동월 15일 국적 불명의 비행기가 독도의 서도에 폭탄 네발을 투하했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9월 15일 오전 11시경 울릉도 통조림 공장 소속선 광영호가 해녀 14명과 선원 등 합 23명이 소라·전복 등을 따고 있는 중 1대의 단발 비행기가 나타나서 독도를 두 번을 돌면서 4개의 폭탄을 던졌는데 이 때문에 어민들이 곧 퇴피에 착수하자 비행기는 남쪽 일본 방향으로 날려 갔다는 것이다. 독도 출어에 대해서는 울릉도 어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어서 지난 봄 4월 25일 한국공군고문관을 통하여 미군 제5공군에 조회했던 바 5월 4일부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극동군의 연습폭격목표로 되어 있지 않다는 회답이 있어서 한국 공군참모장으로부터 경북도를 통하여 울릉도에도 기별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반에 하등의 경고도 없이 폭탄 투하가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 도민들은 1948년 6월 30일의 30명의 사망자를 낸 미공군의 폭격사건의 참담한 기억을 다시 생각하고 불안 공포를 느끼며 미군 당국의 통보를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독도의 어획상황을 듣건대 금년 봄에는 미역만도 2억엔 이상을 뜻고 방금도 소라와 전복이 많이 무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난한 도민들은 그 채취를 위하여 정부 고위층에서 신속히 안전책을 강구하여 보장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계관으로서 절해고도의 국민으로 하여금 믿을 것을 믿게 하여 생활근거를 더 유리하게 해결시켜 주도록 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¹⁶⁾

한국산악회 홍종인 보고에 의하면 미군의 폭격연습이 예정되어 있

16) 『평화신문』(1952.9.23)(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1, p.834).

지 않았으며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나 통보도 없이 미군 폭격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폭격이 일어났지만 1952년 독도에 간 어민들은 봄에만 미역 2억엔 이상을 채취하였다. 어민들은 ‘채취를 위하여 정부 고위층에서 신속히 안전책을 강구하여 보장해 주기’를 갈망하였다.

1952년 4월 28일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어 맥아더라인이 철회되게 되자 일본의 재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 독도에는 폭격희생자 위령비와 행정 주소 울릉군 남면 도동1번지라는 표주가 서 있었지만 일본은 이것을 뽑고 일본영토라는 표목을 세웠다. 1953년 5월 28일 시마네현 수산시험장 소속 시험선은 독도에 불법 상륙하여 울릉도인 30명에게 불법심문, 1953년 6월 27일 시마네현과 일본해상보안부는 「시마네현(島根縣) 오치군(隱地郡) 고카무라(五箇村) 다케시마(竹島)」라고 적은 높이 1간(間) 반, 5촌각(寸角)의 꽃대 2개를 설치하고 ‘주의 다케시마(연안도서를 포함)의 주위 500m 이내는 제1종 공동어업권(해조패류)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무단채포를 금함. 시마네현’이라는 팻말을 세웠다.¹⁷⁾ 대일평화조약이후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류와 어장 조사를 핑계로 불법 상륙, 독도부근을 순회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해군 군함을 파견하여 감시를 하고 일본 측이 세운 팻말을 철거하였으나 언제 일본이 다시 상륙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울릉도 경찰서장은 ‘근래에 와서는 미역따는 우리 어부들까지 일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을 시기 상의군인 홍순철을 비롯한 울릉도인들은 분노하며 독도어장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싸울 것을 결심하였다.¹⁸⁾

17)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研究』(島根縣總務部總務課, 2010), pp.119-120.

18) 홍순철, 『이 땅이 뉘 땅인데』(서울:해안, 1997년), pp.22-23참조.

Ⅲ. 독도어장의 어업행정과 독도 어민들

해방 후 독도어장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1946.1.29)에 의해 일본정부의 정치상·행정상 권력 행사가 정지되었고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1033호(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건」의 제3항, “일본의 선박 및 선원은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령에 의해 독도는 일본령에서 명백히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시마네현은 현령 제49호(1946.7.26)를 통해 「시마네현 어업취제규칙」에서 독도 및 강치어업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였다.¹⁹⁾

그러나 대일평화조약체결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누락되었고 맥아더라인이 철회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일본어선이 한국연안에 대거 출어, 남획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였다. 한국정부는 독도주권 확보와 어자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평화선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1953년 9월 9일 한국정부는 법률 295호인 최초의 수산업법을 공포하였다. 1949년 8월 지방자치법 발효에 따라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소속이 되었으므로 독도어장은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울릉도어업조합 남면 관할로 이 지역어민들의 총유어장이 되었다. 최초의 수산업법은 일제시대 어업령과 마찬가지로 어업을 면허, 허가, 신고어업으로 나누어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도록 하는 어업권제도이다.²⁰⁾ 수산어

19) 田村清三郎, 앞 책, p.73.

20) 수산어법법 제1조 목적에 본법은 수산법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즉 수면의 종합적 이용, 어업의 민주화 및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3대 목표를 표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일제시대 어업령과 다른 것은 없었다.(사단법인수우회, 『현대한국 수산사』, 1987, p.417.)

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을 위한 사업을 면허에 의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²¹⁾

대체적으로 독도수역은 지선(地先)어민이 소유를 인정하고 경제적 기반이 되는 마을어업과 잠수기를 이용한 허가어업, 연근해어장의 어선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어민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것은 마을어업이다. 보통 마을어업은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을 말하는 것으로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 수심 5미터 이내(강원, 경북, 제주 7미터)의 수면에 대해 면허하는 어장으로 예로부터 관행으로 이용되어 온 어장에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 한하여 면허되는 어업이다. 따라서 독도의 마을어업은 수심 7미터이내에서 미역, 전복, 소라 등을 독점적으로 채취하는 어업이며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어장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어장 이용권자는 남면 소속 어민들의 입찰에 의해 허가되었다. 남면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도동어촌계원이 우선적으로 면허받을 수 있는 어장이었다. 수산업법 제3장 제27조의 마을어업권(공동어업권)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27조(우선순위) 해당어장이 소재하는 그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내에 주소로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이 다음의 각호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 전각항의 규정에 불문하고 제1순위로 한다.²²⁾

마을어업 우선 순위는 어장 구역내에 주소로 가진 어민이 제1순위로

21)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동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이 있으며 허가어업으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등이 있다.

22) 「1953년 9월 9일 법률 295호, 어업법 3장 27조」 수산업법조항.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1965년 수산단체법이 공포됨에 따라 최종덕은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독도의 최초주민이 되었다.

한편, 1953년 대일평화조약이후 일본의 독도침탈이 적극화되면서 군특무상사 출신 홍순철은 독도 사수를 위해 1953년 4월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독도 주둔을 준비하면서 자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독도에서의 미역 채취 작업을 구상하였다.

무진장의 미역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따서 수비대에 충당할 것인가를 대원들과 상의했다. 모두 작업을 해서 팔자는 얘기였다. 그럼 대장은 제주에 건너가 해녀를 데리고 올 것이냐 대원들은 미역 따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두도록 부탁하고 해녀 인솔차 제주도로 갔다. 50명의 해녀, 잡역 20명, 운반선 3척, 독도의 식구는 100명이 훨씬 넘었다.²³⁾

홍순철은 경상북도지사 신현철을 만나 독도어장에서의 독점적 어장 이용권을 허가받았다. 홍순철은 이 어장이 ‘산전수전’ 끝에 겨우 얻어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 만큼 독도어장의 미역채취권은 경제적 가치가 컸으므로 이권이 좌우하였다.²⁴⁾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 주둔과 함께 제주해녀들을 동원하여 채취할 것을 계획하고 제주에 가서 해녀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12월 독도의용수비대의 임무는 경북 울릉도 소속 경찰 독도 경비대로 인수되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독도경비대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미옥 해녀에 의하면 ‘미역 시세가 좋아 독도 순경을 하기 위해 뒷돈까지 썼다는 얘기도 공공연했다’고 하였다.²⁵⁾ 독도경비대원들은 미역어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23) 홍순철, 앞 책, p.87.

24) 같은 책, pp.180-181.

25) 「잡녀를 만나다 독도해녀-4」『제민일보』(2009. 4. 20.)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미역채취당(?)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녔고 홍순철은 미역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였다.²⁶⁾ 이와 같이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과 활동 배경에는 미역어장에 대한 가치와 독점적 이용이 거론되어 논쟁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원 정원도씨는 정확하지 않지만 1954년부터 미역채취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원도씨는 당시 미역 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독도에서의 미역 조업활동

질문: 그럼 독도에 작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답: 그거는 54년? 56년? 57년도 쯤. 될거야.

질문: 그럼 몇월달에 들어가셨나요?

답: 3월초에 들어가서 7월 달에 나오지. 미역이 초벌 있고, 두벌, 세벌 있는데 약 3개월이 걸려요. 우리가 들어갈 적에는 해녀 28~30명 정도. 우리가 물골에 가면 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다가 그 밑에 사람이. 참고 사항으로 물골 안에 거기서 살았어.

질문: 그럼 어르신 외에 다른 분들은?

답: 다른 분들도 많이 했죠. 독도해서 미역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할 적에는 수협에서 입찰 해가지고 사가지고 해서 들어갔고, 그 전에는 자유대로 했지. 어장을 할 적에는 누구든지 가서 그랬어.

질문: 수협 입찰 넘어간 거는 언제쯤인지?

답: 56년도인가? 57년도인가? 그 쯤 되지 싶어요.

질문: 그럼 수입이 괜찮았습니까?

답: 옛날에는 미역이 비싸서 괜찮았죠. 그 때 돈을 그제 한 70만원 80만원.. 요새 7000만원쯤 될거야.

질문: 그럼, 수협 입찰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입찰비가 몇 백 만원 갔을거야. 전체 3~400만원 쯤가지고 그랬을거야. 낙찰되는 사람만이 어장권을 획득하지.

26) 홍순철, 앞 책, p.181.

질문: 그러면 한 팀 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답: 한 팀 밖에 못 들어가지

질문: 그럼 그 해에만?

답: 그 해에만. 알뜰히 해가지고 나오면 7월달에 돼서 나오지.

질문: 그럼 해너 분들은 3월달에 들어가서 7월달까지 쪽 계신 거예요?

답: 쪽 했는데 얼마만큼 하면 따라가....??? 그게 그래가 했기 때문에 진공자하고 ..

질문: 신문에 나오신 그?

답: 그래. 그 아가씨가 21인가 그랬다더라.

질문: 그럼 사진자료 같은 건 있어요?

답: 없어요. 그 당시 카메라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순철이가 같이 안 찍으면 일도 없어요.

질문: 해너 조업하실 때 물골에서 거주 하시고, 조업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답: 주변에서 뽕 들어가면 가에 가면 바위에 다 있어요. 가재바위도 있고, 산만디, 등만디 주변에 다 있어요. 동도에 바닷가 미역이 진짜 형편없이 많았어요.

질문: 물골 안에서 거주하시는 28명 정도 된다는데 다 하실 수 있어요?

답: 다 했죠. 같이 생활해요. 반 나눠 가지고. 하하.

질문: 해너분은 몇 분정도?

답: 해너분은 30명 정도 되고, 우리하고 합쳐서 40명 정도 됐어요.

질문: 저희 가보니까 그 정도는 못 살겠던데..

답: 씻기가 여사 일이 아니에요. 여름철은 덜한데 비가 많이 오면 여사일이 아니에요. 씻는거는 물이 계속 나오니까 하고, 최소만 하고. 세수나 하고 그렇죠. 목욕하고 그런거는 못해요.

질문: 불 피우는 거는?

답: 나무를 가져가죠. 신고 가야 되요.

질문: 3월부터 7월이면 태풍 같은 것도 있을건데.. 물골에 있으면 안전하신가요?

답: 뭐.. 당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물골이 있으니까 쓸데없이 막아놨어요. 그런 머리가 안돌아가니. 홍순철씨가 연구해서 물탱크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에 가서 보조 그거 받아서 도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민들 그거 했는데 그게 그냥 놔두면 좋은데..

어: 그럼 그 해너분하고 활동하신 게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정: 우리는 한 번하고 그 이후에 들락날락은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때는 우리가 돈 벌었다는 것은 우리뿐이지, 다른 사람은 돈도 못 벌었어요. 우리는 당

시에 경비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어요. 미역을 널어놨다가 파도에 날라간 다든가 그런게 없었어요.

여: 미역 너는데는?

정: 바위위에요. 틈이 있으면 널고 그랬죠. 물골에 가면 앞에 자잔한 돌밭이 있는데 거기도 붙이고, 독도 어디 어디 다 맏기면서 그랬어요. 파도가 심하다면 올리고 그랬어요. 조직적으로 잘했어요. 우리가 돈 벌었어요. 72만원씩 벌었으니까.²⁷⁾

위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의용수비대는 54~57년경 독도에 주둔한 시기부터 미역 조업을 하였다. 이들의 미역 조업은 제주에서 30명, 많게는 50여명의 해녀들을 집단적으로 모집하여 운반선 3척을 구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수시로 왕래하였다. 미역 조업은 현재가격 7,000만원 상당의 고수입을 올릴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어업으로 입찰은 경쟁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의용수비대 일원 정원도씨는 1957년 300~400만원의 입찰비를 내고 미역어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 1959년 19살에 독도에 간 김공자해녀는 해녀 36명과 남자 10명이 정원도씨와 함께 일을 했다. 남자들은 풍선배를 이용하여 미역을 낚았고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 식사를 전담하는 해녀로 나누어 미역을 채취하였다. 미역채취는 3월에 시작하여 5~6월까지 3개월 정도였다.²⁸⁾

1962년 1월 20일 각령 제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 제4조에 의해 자연부락 단위로 어촌계 설립이 공포되었다.²⁹⁾ 울릉도어업조

27) 김호동, 앞 책, pp.40-43.

28) 김공자해녀 증언(『제주해녀의 재조명』(해녀박물관, 2011), p.275.)

29) 수협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된 어촌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①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② 소속지구별 조합 소유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전용 ③ 어민의 생활 필수품과 어선, 어구의 공동구매 ④ 어촌공동시설 ⑤ 수산물의 공동제조 및 생산품의 공동 판매, ⑥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당 등으로 어촌계의 주요 활동은 어업권의 관리 주체로서의 기능이다. 어업권의 취득, 어업의 경영, 지구별 조합이 보유하는 어업권의 전유 행사 등 제1종 공동어업권에서 제3종 공동어업권까지, 양식어업권, 정치어업권, 내수면어업권 등 면허어업권에 관한 모든 행사이다. 이 가운데 공동어업권은 반드시 지구별 조합이나 어촌계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965년 2월 독도어장은 울릉도어업협동조합 도동어촌계의 1종 공동

합은 북면, 남면, 서면의 행정부락으로 구분되었던 어장 체계를 자연부락 단위로 설립도록 하여 도동어촌계가 설립되었다. 도동어촌계 관할 독도어장은 도동어촌계 소속 1종 공동 어장으로 지정되었고 1965년 3월에는 도동어촌계 계원이던 최종덕이 독도에 거주하면서 마을어업권을 획득하였다.

최종덕은 마을어업권을 1965년 3월 획득한 이후 15년 동안 미역, 전복, 소라 등을 채취하면서, 서도의 해안에 3채의 움막을 짓고 생활하였다. 최종덕도 제주해녀 수십명을 동원하여 미역 채취업을 경영하였으나 양식미역이 유행한 이후 잠수기 허가어업권을 취득하고 전복 양식 사업을 시도 하였다. 여름 파도가 거센 2~3개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작업을 하였다.³⁰⁾ 최종덕은 직접 제주에 가서 잠수부를 구했고 이들의 도움으로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양식 미역이 유행하기 이전, 독도어장은 미역어장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였다. 독도에 간 어민들은 미역을 주로 채취하였고 독도의용수비대 또한 미역채취를 하였다. 이들은 수십명의 해녀를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며 조직적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정부의 주도하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어민 숙소나 어선 계류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최종덕은 마을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주를 결심하였다. 그는 스스로 집을 짓고 정주 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가족들을 독도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독도어장의 재산적 가치로 인해 최종덕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독도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다.

어장으로 경북면허 830호로 단독 인가받았다.

현재 어업권자는 울릉군 수산업 협동조합이었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산업단체사』(삼진기업사, 1980), pp.276-368).

30) 유하영, 「독도주민 생활사와 실효지배: “독도는 내가 지킨다”」, 대구한의과대 발표문, 2012년, 6월.

[독도어장]

- 어업권: 경북면허 128호(도동어촌계 공동어장 185.4ha 중 140ha 차지)
- 어업권자: 울릉군 수협 도동어촌계

[공동어장 운영]

※ 종전 입어자 : 행사료 지불 후 입어

- 1965년 3월 ~ 1987년 9월 : 최종덕
- 1987년 3월 ~ 1991년 10월: 조준기(최종덕의 사위)
- 연간 입어료: 2백만원(연간 생산량: 25톤, 30백만원)
- 조업어선: 독도사랑호, 2.49톤(종전: 덕진호 1.99톤)
- * 독도사랑호는 1991년 건조하였으며, 소유자는 서유석

- 1991년 11월 1일 이후: 도동어촌계 직영
- 연간 생산: 7 M/T 60,795천원
- 조업어선: 명성호 208톤, 승선원: 김성도의외 3명

주: 『독도어장 운영관련 자료』(도동어촌계 내부자료)에서 인용

IV. 제주해녀의 독도어장 진출과 어업 실태

1. 제주해녀의 독도 진출과 독도의용수비대

일제시대 매년 3천명 이상의 제주출신 해녀들은 제주를 떠나 한반도 전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해녀들이 채취한 생산품은 일본에서 양갱이나 과자를 만드는 재료, 상처를 소독하는 의약품이나 화약을 만드는 재료, 비단을 짜는 풀이나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 우뭇가사리, 가사리, 감태 등이었다. 이러한 해조류들은 일본 공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공업용 원료였다. 이 때문에 총독부는 해녀어업을 보호하고 한반도어장에서의 해녀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해녀들의 어업 활동은 국내어장으로 축소되었고 어

업 환경은 차별과 멸시로 더욱 악화되었다. 육지 해조류어장 주민들은 법적으로 제주해녀의 입회(入會)를 허락하였지만 자신들의 어장에서 독점적으로 활동하는 해녀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제주해녀를 ‘보작이년’, ‘제주년’이라고 불렀고 풍속을 어지럽히고 어업질서를 교란시키는 침략자로 인식하였다. 수산업법 10조에 의해 마을어장의 매대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선수협에서는 어장을 팔아 제주 해녀의 입어를 거절하였다.³¹⁾

또한 이들은 공동시설 즉 방파제 수축 또는 신호등 가설 등을 빙자하여 해녀에게 무리한 부담을 가하고 해초류 위탁 판매금을 장기 지체하였다.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 천초, 청각, 모자반 기타 생산물에 대한 현물은 4,6제라는 분배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였지만 제주해녀의 몫 4는 수협을 비롯하여 어협지도원 수당, 검근의 차이, 기타 제잡비로 공제하여 해녀의 수입은 1할 5분 정도였다. 해방후 활동 어장이 사라진 제주 해녀들은 어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육지어장에 갈 수 밖에 없었다.³²⁾

이러한 제주해녀의 어업적 기반이 붕괴되었을 때 독도어업은 시작되었다. 어업 공간이 없었던 제주해녀들은 모집에 의해 적극적으로 건너갔다. 독도에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 후에 씻을 수 있는 물이 없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 고작이었지만 어장이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어장에 대한 착취와 방을 얻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지만 무인도 독도에는 방세 걱정도 없고 주위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독도에서 해녀들은 물골 자갈밭에 가마니 몇 장을 깔고 자거나 단체로 50여명이 갔을 때 물골에 나무를 이용하여 2층으로 단을 만들어 살았다.

31)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21호, 2007년)

32) 강대원, 『제주잠수권익투쟁사』(제주문화, 2001년), pp.255-263.

밤에는 굴속에 가마니를 깔아서 작지불이나 촛불을 이용해 불을 밝히고 미리 준비해 간 담요를 덮고 눈을 붙이지만 바다 바람과 함께 스며드는 습하기가 심해서 소중기만 입고 뚜데기 걸친 몸을 녹눅하게 만들었다. (박옥랑 해녀)³³⁾

제주해녀의 독도 진출은 1940년경 일본인들이 제주 해녀를 고용하여 성게 채취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들은 장기간 독도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방후 울릉도에 간 제주 해녀의 증언에 의하면 울릉도에는 해녀들이 없었고 대규모 이동은 1952년 9월 한국산악회가 제2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했을 때 제주해녀 14명이 조사를 목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스스로 독도에 간 해녀들은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집에 의해 간 해녀이다.³⁴⁾

따라서 제주해녀의 독도 거주 시작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모집한 이후이다. 처음 독도의용수비대는 지인을 통하여 해녀들을 모집하였다. 1954년 3살 된 딸을 데리고 독도에 간 조봉옥 해녀는 자신이 가장 먼저 갔다고 했다. 그녀는 울릉도 천부에 살면서 상점을 하는 시삼촌 ‘백사만’이 울릉도에 와서 물질을 하면 돈 벌이가 될 것이라고 종용하여 세 살짜리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동네 친구 2명 등 7명이 갔고 울릉도에서 전주(錢主)의 오징어 배를 타고 독도에 갔다.³⁵⁾ 같은 시기에 독도로 간 박옥랑, 김순하, 박애자 해녀는 오징어 장사를 하는 친구의 권유로 울릉도를 경유하여 독도에 갔다.³⁶⁾ 당시 독도에 간 해녀들은 울릉도에 거주했던 해녀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의용수비대의 개별 모집에 의해 독도로 간 것이다.

33) 좌혜경·권미선, 「독도 출가해녀와 해녀 항일」, 『제주해녀의 재조명』(해녀박물관, 2011), p.265.

34) 정병준, 『독도 1947』(서울: 돌베개, 2011), p.201.

35) 조봉옥 해녀증언(『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박물관, 2011), p.270.

36) 박옥랑, 김순하 해녀 증언(『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박물관, 2011), pp.264-267.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독도에 간 것은 당시 1950년 후반경인 듯하다. 1959년 19살에 독도에 간 김공자 해녀는 협제리 해녀 36명과 남자 10명 등 45명이 함께 독도에 갔다. 재향군인회 회장 김덕근씨와 부회장 정원도씨가 협제리 한 지역에서 집단 모집하였다.³⁷⁾

독도의용수비대는 처음 서도에 거주하였으나 해녀들이 활동하면서 동도로 이전하였고 해녀들은 서도 물골에 거주하였다. 해녀들은 물이 가장 귀했으므로 물골 수신(水神)에게 제를 올렸다. 김공자 해녀는 제를 지내면 물통의 물이 전 보다 시퍼렇게 나와 40여명의 음용수를 해결되었다고 하였다.³⁸⁾ 어장이 있지만 만약 물이 없었다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해녀들은 감사의 표시를 물골 수신(水神)에게 나타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바위섬은 물과 미역어장이 확보됨으로써 거주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해녀들은 동도에 사는 의용수비대와 함께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 지킴이에 큰 일조를 하였다.

1954년 홍순칠 의용수비대 대장이 독도에 막사를 지으려고 통나무를 싣고 왔는데 물가까지 옮길 수 없었다. 해녀들은 바다에 떨어뜨린 통나무를 물가까지 밀어주고 막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먹을 물이 떨어져 곤경에 처했을 때 해녀들은 서도 물골에서 물을 실어 동도에 살던 경비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파도로 울릉도 보급선이 독도에 접안할 수 없어 경비대원들이 아사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녀들은 풍랑 속에 뛰어들어 부식물을 받아왔다.

이불을 뜯어 밧줄을 만들고 그 밧줄로 몸을 묶은 후 거센 풍랑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우리가 배에서 부식물을 받아 해업처 오면 독도경비대원들은 이불 끈 밧줄을 끌어당기면서 우리를 도왔어요. 힘센 장정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바닷가에까

37) 김공자 해녀 증언(『제주해녀의 제조명』, 해녀박물관, 2011, pp.275-277).

38) 김공자 해녀 증언(『제주해녀의 제조명』, 해녀박물관, 2011, p.276).

지 다 나왔는데도 계속 끌어 당기는 바람에 바위의 굴 껍질에 긁혀 상처가 많이 나서 고생했어요.(김순이 해녀)³⁹⁾

의용수비대들이 기아 위험에 처하자 제주해녀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풍랑 속에 뛰어들어 식량을 조달하였다. 독도거주자들에게는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생활이었지만 이들의 생활에 생명을 불어 넣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된 것도 제주해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독도어장의 진출 방식과 조업 형태의 변화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독도 마을어장은 울릉도어업조합 관할이 되어 입찰제도가 시행되었다. 울릉도어업조합 계원은 일정한 행사료를 지불하면 어장의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시기부터 제주해녀들이 모집되어 집단적으로 가게 된 것이다. 독도의 용수비대가 제주에서 집단적으로 모집한 이후로 생각되는데 당시 해녀들은 오로지 미역만 채취하였다.

다른 것 딸 시간이 없어. 미역만 받으니까. 다른 것을 따면 그만큼 시간을 버리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중어라 미역만을 따는 거야. 다른 것은 반찬으로 해 먹을려고 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따. 가지고 가도 받는 사람이 없는데.(김○○, 80대)

따려면 미역을 해야지 먹고 살거즌. 그게 밥줄이야. 전복이나 문어는 간식용이지 미역은 돈이 됐어. 전복이나 그런 거는 그 때는 비싼 그런 거 안 사먹거즌. 미역은 쌀하고 바꿔서 먹기라고 하지. 그래서(전복과 문어는)간식용이야. 집에서 까먹고 그랬어. 미역은 돈이 돼(손○○, 80대)⁴⁰⁾

독도에는 전복, 소라, 등 다양한 해산물이 있었지만 해녀들은 돈이

39) 독도의병대, 『아 제주해녀여』 참조.

40) 경상북도, 앞 책, 2009, p.161.

되는 미역만 채취하였다. 미역이 가장 큰 소득원이었다.

조봉옥 해녀는 ‘가재섬에서 우는 물개들이 꺾꺾거리는 울음소리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고 회고하였다. 1959년 독도에 간 김공자 해녀는 당시 독도에는 바다사자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우리가 독도에서 작업할 때는 바다사자가 참 많았어요. 한번은 바다에서 물질하고 올라오니 어린사자가 내 바구니에서 놀고 있지 않겠어요? 하도 반가워서 마침 사진기를 가지고 방문한 분이 있어서 바다사지를 안고 같이 사진을 찍었죠.(김공자 해녀)⁴¹⁾

홍순칠 자서전에 의하면 독도에서 해녀 50명, 보조원 20명 등 100명이 거주하였다고 증언한다. 1959년 김공자해녀는 금릉과 옹포를 포함한 협재 해녀 36명과 남자 10명이 독도에 갔다고 하였다. 조봉옥 해녀는 1969년 동북, 북촌, 서촌해녀들 30명과 8살 된 딸과 함께 독도에 갔다. 과연 거주 공간이 없는 독도에 수십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독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장되었다고 말하지만 당시 해녀들은 어업 공간이 없었고 어장 이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므로 해녀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악 조건을 참아내면서 견디었다. 양식미역이 유행하기 이전 독도미역은 큰 소득원이었다.

해녀들은 독도로 출발할 때 몇 달치의 식량과 된장 등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식량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갈매기알을 삶아 먹거나 썩을 넣어 죽을 끓여 먹었다. 날이 나빠 전주(錢主)들이 오지 못하면 소라를 삶아먹고 영영우는 물개를 잡아먹기도 하였다고 한다.⁴²⁾

독도의용수비대에 모집된 해녀들은 임노동자 형태로 고용되었다. 보

41) 독도의용대, 앞 글.

42) 조봉옥해녀 증언, (『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박물관, 2011, p.271)

통 해녀들의 수입은 4대6 비율로 해녀의 몫이 4였지만 독도에서는 생산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달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 1954년 조봉옥 해녀는 ‘보통 한달을 사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한달을 기준으로 3만원을 받았다. 미역은 전복과 같이 잠수 능력이 요구되는 어업이 아니라 낚을 들고 바닷가에서 미역을 베는 단순 노동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독도에서는 월급 형태의 고정급제였다. 독도어장에서는 매년 입찰자가 달라 모집자는 자신들의 경로로 해녀들을 모집했으므로 조봉옥 해녀는 1954년 한 해만 갔다고 증언하였다.⁴³⁾

독도에 갈 때 해녀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결혼한 해녀들은 육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으므로 미혼모가 많이 갔지만 아이가 있을 경우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구좌읍 하도리가 고향인 조봉옥 해녀는 1954년 세 살된 딸을 데리고 가는 대신 아기업개로 시아버지와 시누이, 동네친구 2명과 함께 독도에서 갔다. 양복순 해녀는 3살, 6살된 남매를 데리고 갔다. 이 남매는 어머니가 물질을 간 사이 두 명이 바닷가 근처에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한번은 우리가 물질하러 간 사이에 아이들이 빨간색 손수건을 흔들며 노는 것을 지나가던 비행기가 보았나봐요. 외딴 섬에 아이들 두 명이 빨간색 손수건을 흔들고 있으니 그 곳을 지나가던 비행기가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한동안 멈춰 서서 동도에 있는 경비대에 무전으로 연락했대요(양복순 해녀)⁴⁴⁾

한편, 독도의용수비대의 임무가 경비대에 인계된 후 독도의 어업권은 다시 울릉도어업조합에 귀속되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어촌계가 설립되고 독도는 제1종 공동어장(마을어장)으로 지정되었다. 제1종 공동어장(마을어장)은 지선어민을 우선으로 하여

43) 조봉옥해녀 증언, 2012.11.16 녹취합.

44) 독도의용대, 앞 글.

지선어민에게 우선권을 주었기에 최종덕은 1965년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독도어장은 미역이 가장 큰 수입이었으나 70년대 중반 양식 미역이 성행하자 최종덕은 잠수기어업을 시도하였다. 잠수기어업은 바다 밑 전복과 소라등 패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으로 잠수부가 간이 마스크를 쓰고 고무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 20m이하의 바다 밑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허가어업을 말한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어 구한말 제주 전복어장을 중심으로 한국전역에 전파된 어업이다.

1973년 최종덕씨는 1969년 구좌읍 해녀들을 약 30명 고용한 인연에 의해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고순자와 문연심 해녀를 직접 찾아가다. “어느날 제주에 최종덕씨가 머구리작업을 했던 해녀들을 찾아 왔어” 라고 하듯이 최종덕씨는 해녀 잠수부를 찾아가 부탁하였다.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고순자 해녀는 잠수기어민으로 13년간 독도에서 생활하였다. 잠수부는 전체 10에서 6할은 해녀 몫이고 4할은 잠수기배 주인의 몫으로 생산량 분배를 하였다. 고순자해녀는 때로는 100m까지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하고 4시간이상 작업하면 전복, 소라, 해삼, 문어를 가득 잡았다고 회고하였다. 문어는 삶아서 건조를 시키고 소라, 전복은 날것으로 울릉도에 가져왔다고 한다.⁴⁵⁾ 일제시대 잠수기 2대와 30명이 동원된 잠수기어업은 이후 잠수기 1대, 제주 해녀 2명이 번갈아가면서 작업하는 소규모 어장으로 축소되었다.

독도어장의 조업 형태는 어장적 가치에 의해 미역어장에서 전복등 패류어장으로 바뀌었다. 미역의 가치가 높았을 때 40명 이상의 해녀들이 미역어업에 종사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자연산 돌미역의 가치가 사라지자 1~2명의 잠수부가 전복과 소라 작업을 하였다. 돌미역의 가치가 사라짐으로써 수 십명 단위의 조업 활동은 없어졌지만 독도어장은 여전히 독도주민 김성도와 제주해녀 출신 김신열이 동거하면서 유지되

45) 김호동, 앞의 책.

고 있다.

V. 맺음말

1950년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어장을 지켰던 제주해녀들은 아직도 독도어업을 기억하고 있다.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노인 80명은 독도 어업을 회상하며 독도어장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무용으로 표출하고 있다. 물이 없고 거주 공간이 없는 독도였지만 아직까지도 독도어장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독도무용단을 조직하여 춤을 추고 있다.

당시 독도에 간 해녀들은 생계를 위한 활동에만 전념하지 않고 독도의용수비대를 보좌하여 함께 독도를 지켜나갔다. 만약 풍랑으로 배가 접안하지 못했을 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을 때,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해녀들은 앞장서 해결하였고 이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독도의용수비대와 경비대 대원들은 독도를 지킬 수가 있었다.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와 경비대의 활동 뒤에는 제주해녀들의 숨은 노력과 공로가 있었다.

1940년부터 시작된 제주해녀의 독도어업은 1956년에는 한해에 30~40명의 해녀들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당히 해녀들은 어로 작업이 불가능한 바위섬을 개척하고 거주 공간을 마련하였다. 제주해녀가 독도어장을 개척하고 삶의 터전으로 인식한 후 최초의 독도 주민 최종덕은 독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밝혀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독도어장은 한국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미역어장으로 약 1820년경부터 거문도인들이 미역 채취를 위해 도항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한국최고의 오징어 어장으로 각광받아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장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요한 어장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는 죽도어렵합자회사가 독점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였으나 식민지 지배가 끝나자 한국어민들은 독도를 해방과 함께 다시 찾은 영토로 인식하였다.

둘째, 해방후, 6.25동란 등 사회적 혼란으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어민들은 미군에 의한 폭격 사건과 일본이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침략 행위에 분노하였다. 울릉도민은 독도 사수를 위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자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 지사에게 어장 독점권을 요구하였고 제주에 가서 해녀 수십명 단위의 해녀를 모집하여 독도어장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비대 주둔과 최종덕이 제1종 마을어업권을 획득함에 따라 물골이 정비되고 독도는 거주공간으로 바뀌었다.

셋째, 독도의용수비대 주둔이후 제주 해녀들은 3월~6,7월까지 독도에서 생활하였다. 해녀들은 미역만 채취하였고 판로가 적은 전복, 소라 등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후반 양식미역이 유행하면서 자연산 미역은 가치가 떨어졌고 독도의 어업 형태는 변질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와 최종덕은 수 십명의 제주해녀를 동원하여 독도를 미역어장으로 이용하였으나 양식미역이 유행한 이후에는 잠수부를 이용하여 전복, 소라를 채취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후 한국인들은 독도를 광복과 함께 다시 찾은 영토로 인식하고 제주해녀를 동원하여 어장을 개척하였다. 독도어장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미역이 있었고 그 상품적 가치가 대단하였기 때문에 독도의용수비대를 비롯한 동해안 주변 어민들은 이 어장을 뺏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제주해녀는 독도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생존을 위협하는 악조건을 극복하였다. 이들은 독도가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물골 수신(水神)에게 제를 올리는 등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기원하였다. 제주해녀들의 독도사랑은 독도 최초

주민 최종택에게 계승되어 독도 수호에 매진되었고 현재 한국인들의 독도 사랑으로 승화되어 있다.

■ 논문투고일자 : 2012.11.02. 심사완료 : 2012.11.15. 게재확정일자 : 2012.11.25.

K C I

Fishing Ground around Dokdo and Women Divers from Jeju

Kim, Su-hee

[Abstract]

In this thesis, were analysed the situation of fishing ground around Dokdo after the liberation and fishermen's recognition of it. Fishermen from Ulleungdo and the east coast of Korea, being confronted by the bombing of Dokdo by U.S. forces and Japanese disseisin of Dokdo in the chaos of the Korean War, insisted that it was 'their own ancestor's fishing ground', instituted a claim for damages suffered to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organized volunteer Dokdo guards against Japanese pillaging act around Dokdo.

After the liberation, fishermen living on Ulleungdo and the east coast of Korea knew that Dokdo is Korea's territory. Moreover, even Japanese fishermen having worked in the this fishing ground more than 20 years, testified to the fact that Dokdo was pertaining to Ulleungdo. Consequently, with the end of compulsive occupation of Choson by the imperialist Japan, fishing ground of Dokdo should come under the jurisdiction of Korean government, while there was no conflict around Dokdo under the Japanese regime in Choson. Korean fishermen took a profound interest in Fishery around Dokdo, because in these fishing grounds there was salient for their living Seaweed Fishery, at the same time the best squid fishing grounds. According to the report of US armed forces in Korea, Dokdo fisheries were used by 16,000 fishermen for their living, which is meant to show stately importance of Dokdo.

By Fisheries Act of 1953, Dokdo fisheries became attributable to Ulleungdo Fisheries Union, without being subject to this law. Instead, volunteer Dokdo guards hired 50 Jeju women divers to harvest the brown seaweed for their own expenses. In 1956, after the end of the volunteer Dokdo guards' mission, the

common fishery rights of Dokdo was sold by the bidding system until 1964. In 1962, according to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Dodong fishery cooperatives were organized. In 1965, Choi Jong-Duck, one of the members of Dodong fishery cooperatives, who decided to live in Dokdo, acquired first-class common fishery rights.

(Yeongnam University / sic1225@daum.net)

주제어 : 독도폭격사건, 일본의 침탈, 독도의용수비대, 제주해녀, 최종덕, 미역

Key words : bombing of Dokdo, Japanese pillaging act, volunteer Dokdo guards, Jeju women divers, Choi Jong-Duck, seaweed

